

1. 개정이유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법률 제21027호, '25. 8. 14. 공포, '26. 1. 1. 시행)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기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서식 마련(안 제16조제6호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및 고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를 통보하기 위한 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6서식

제16조의2 중 “별지 제18호의6서식”을 “별지 제18호의7서식”으로,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별지 제18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별지 제18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4 중 “별지 제18호의9서식”을 “별지 제18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별지 제18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별지 제18호의8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8서식 중 “신규/매도/매수/입금/출금/해지 등”을 “원화 입금/원화 출금/가상자산 매수/가상자산 매도/가상자산 입고/가상자산 출고 등”으로 하고, “매수”는 “가상자산 출고”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별지 제18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

을 “별지 제18호의4서식에서 별지 제18호의6서식 중 해당하는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6서식 부터 별지 제18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8호의7서식 부터 별지 제18호의9서식 까지 및 별지 제18호의10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8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 작성기관 : >

연번	기관명	유형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외형거래액 (억원)	비고

작성방법

- 작성기관별로 해당 기관을 "가, 나, 다"순으로 적되,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오.
- 유형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유형을 명시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7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 5. (생략) <u><신 설></u>	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 ----- -----. 1. ~ 5. (현행과 같음) 6. 영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u>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u> <u>별지 제18호의6서식</u>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u>별지 제18호의6서식</u> 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u>별지 제18호의7서식</u> 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 ----- <u>별지 제18호의7서식</u> ----- ----- ----- <u>별지 제18호의8서식</u> ----- -----.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u>별지 제18호의8서식</u> 에 따른다. ② (생략)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 ----- ----- <u>별지 제18호의9서식</u>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은 <u>별지 제18호의9서식</u> 에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 ----- ---- <u>별지 제18호의10서식</u> ----

따른다. 제17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u>별지 제18호의7서식</u>의 취업지원·예정 확인서 2·3. (생략) ③·④ (생략)	-----. 제17조(취업승인) ① ----- ----- ----- -----. ----- 별지 제18호의8서식-----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별지 제18호의8서식</u>----- ----- 2·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